E-MAIL: ruteachers@hanmail.net

저항하는 교사들의 네트워크 생각다니기사들

기업주들만 살찌울 공무원연금 개악을 규탄한다

5월 29일 새벽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공무 원연금 개악을 통과시켰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개악한 뒤 불과 6년 만에, 그것도 사 상 최악의 개악이다.

개악안에 따르면 28.6퍼센트 더 내고 10.5 퍼센트 덜 받게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 소 7천2백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여금 납부 기한을 36년까지 늘리 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유족연금도 10퍼센트 삭감하고 모 든 퇴직자들의 연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기 로 했다. 소득재분배 도입, 연금 수급 요건 조정 등 향후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개악도 포함됐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개악이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노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겼 다. 그 결과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70년 간 3백33조 원의 생계비를 빼앗기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빌미 로 결국 공적 연금을 하향 평준화했다. 여 당 측 인사인 김용하 교수의 말에 따르면, 민간 노동자에 비해 더 내는 기여금과 적게 받는 퇴직 수당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국민연금의 지급률과 사실상 같 아진다. 수익비(1.48)는 국민연금(1.5)보다 더 열악해졌다.

정부·여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인 양 떠들어대더니 미래 노동자들의 연금을 가 장 많이 깎았다. 2016년에 임용할 9급 공무 원은 30년 재직 후 1백34만 원의 연금을 받 게 된다.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 는 돈이다.

이렇게 삭감된 돈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향이 명기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적정성 추지 않았다. 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정했다. 원점 재 율 50퍼센트 운운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 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었다. 이렇게 삭감된 때문배 기능을 훨씬 강화하는 방식으로 돼 행부가 투쟁을 회피하고 교섭만을 중시하 취질 수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부자 감세로 줄어든 야 한다. 세수를 메꾸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회적 합의"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교사·공 무원 노동자들은 개악안에 합의해 준 적 없 다! 개악안에 합의해 준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내에서 강력한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한편, 진보진영 내에서 '공무원연금을 일 부 양보하고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주 장들이 제기돼 연금 투쟁 전선이 교란됐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5.2 여야 합의안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모순과 동요를 계속 했다. 5·2 합의안이 발표되자 5월 4일에 "공 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는 성 명서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상 향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나란히 냈

식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과

유감스럽게도 진보진영 내에서 공무원연 길을 따른 것이다. 금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선 하는 것이 전체 노동계급 입장에서 보면 좋 새누리당은 마치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다는 견해가 득세했다. 그러나 정규직·고소

략'은 비현실적이다.

은 다른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라 는 점이 문제다. 그런데 지배자들은 경제 위 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해 어림도 없 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5월 29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악 직해 왔다. 안을 처리하면서 공적 연금 강화에 관해서 는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구성만 합의했 다. 10월까지 시간을 끌다가 유야무야로 끝 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절감한 재정 는 태도를 취한 것은 스스로 패배로 이끄는

의미

연합은 최악의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는 "사 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회연대전 투쟁을 계기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쟁 자양분이 될 것이다.

과 교사들의 노동조건 방어 투쟁이 분리돼 우선 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양보의 대상 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경험을 했 다. 또, 과거에는 민주노총의 다른 부문 노 동자들과 공동 투쟁을 벌인 경험이 거의 없 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4월 파업의 중 요한 일부로서 기능했다.

> 그리고 전교조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면서 원칙 있게 투쟁을 조

또, 공무원노조 이충재 집행부가 배신적 타협을 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투쟁은 끝 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조 합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박 3 일 농성을 했다. 이것은 이번 개악이 교사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다. 강력한 항의 때문에 후자의 성명서가 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 개선은 턱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 아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상 삭제됐지만 민주노총은 모순과 동요를 멈 없다. 국민연금 재정 규모가 훨씬 크기 때 이 아님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문이다.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야가 합의안 국민연금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하지 정부와 기업주의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을 치켜세우는 사기극을 벌이기가 훨씬 쉬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 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 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지배자 웠을 것이다. 또,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들을 압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집 지지한 운동 내 온건파 리더들의 모순이 감

기업주 언론들은 이번 개악을 '거북이 개 혁'이라는 둥 '맹탕 개혁'이라는 둥 해 가며 '5년 뒤 또 개악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주문 하고 있다. 이번 전투를 원칙 있게 치른 경 그동안 전교조에는 돈 문제로 싸우기를 헐어서 교훈을 잘 이끌어낸다면 다음 전투 개악안에 합의해 준 것처럼 말한다. 새정치 즉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연금 를 더욱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 소중한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의 의미와 전교조의 과제

법외노조화 저지 캠페인을 구축하자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화 공격의 법률적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 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로 한정"하며,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반노동적 독소 조항이다. 교원노조법 자체가 노동3권이 아니라 교섭 권을 제한하고 무엇보다 쟁의 행위를 금지 한 악법으로서, 진작에 폐지돼야 마땅한 악 법이다.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적법성 판결을 유보하고,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조차 교원노조법 제2조가 문제 있다고 본것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 마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서, 전교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 단체총연맹(EI)이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기 본권 억압 상황을 개선하라고 헌법재판소 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5일 만에 1만 8천93 명이 긴급 탄원서에 서명했는데도, 헌법재 판소는 전교조에 공개변론의 기회조차 주 지 않고 의견서만 갖고 서둘러 결정했다. 6 만 명이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의 명운이 달 려 있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한 태 도는 지독하게 엘리트주의적이고 독선적이 었다.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일 뿐,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에는 아무 관심 없는 국가기관임을 보여 준다.

또, 헌법재판소의 급작스러운 결정이 최근 박근혜가 황교안을 총리로 지명해 '공안 통 치'를 하겠다고 선전 포고한 것과 맥을 같 이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 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박근혜 당선 2년 기념 선물로 진보당 해산을 갖다 바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도 전교조 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위축시 키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다.



자주적 단결권 부정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이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매우 저열한 수준에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모름지기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자들과 천대 받는 사람들의 운동, 활동, 조직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지 못하도록법으로 금지하는 게 "교원노조의 자주성과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니, 이 무슨얼토당토않은 궤변이란 말인가. 한 마디로, 저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 아랫것들이 스스로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할 자유는 무한대로 허용해 주지만, 노동자들이 그 착취와 탄압에 맞서 운동과 조직을 건설할 권리에 대해서는 쥐뿔만큼만 인정해 준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의 법률적 대전제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서는 분명하게 합헌 결정을 해놓고서는, 다 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할 때도 있 고 아닐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 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 취지와 목 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 은 교원노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단서를 붙여 놓은 뒤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인 노동조합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 각하(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종료) 처리했다. 그러 나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 자 투쟁으로 폐지된 행정관청의 노조해산 명령권을 그 뒤 노태우 정권이 슬그머니 삽 입한 시행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는 단서적 판시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각하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교조의 "반승반패"라고 보는 견해가 조합 내부에 존재하는 듯하다.

전교조가 2심 재판에서 법률적 다툼을 할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 가 사실상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까지 보는 것은 부 적절하다. 사실도 아니거니와, 자칫 헌법재 판소 결정에 부분적 '진보성'이 있는 것처럼 미화하고 이를 법외노조화 공격 저지 투쟁 의 무기로 사용하려 하는 정치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조 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 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모든 쟁점에서 전교조에 전패를 안긴 데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 기 때문에 결코 낙관할 상황이 못 된다.

따라서 마땅히 법률적 대비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평조합원들이 동참하는 대중적인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캠페인을 통 해 드넓은 전교조 지키기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벋떠까뜮이 독자들에게

〈벌떡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4면짜리 월간 신문입니다. 〈벌떡교사들〉의 호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1부 연간 정기구독료는 11,000원입니다(우편료 5,000원 포함).

5부 이상 정기구독 시 우편료는 무료입니다.

- ▶ 구독자는 정기구독자가 돼 주세요.
- ▶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주위 동료 교사들에게도 서너 부 배포해 주세요.
- ▶ 공유하고 싶은 투쟁 경험, 투쟁 전술,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죠? 그러면 기고해 주세요. ruteachers@hanmail.net로 보내 주세요. 글 마감은 매달 12일입니다.
- ▶ 얼마라도 괜찮아요, 후원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및 후원금 입금 계좌] 농협 356-0965-6124-13 (예금주 김현옥)

공개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일시: 2015년 6월 13일(토) 15:00 - 17:30

장소: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

연사: 정원석(경기 수원중등지회장) 등

주최: <벌떡교사들>

문의: 02-737-0528 / 010-3240-0879(김현옥) / ruteachers@daum.net